



—質疑와 有權解釈—

문 Cyclosporine의 혈중농도측정검사시 사용 되는 RIAKIT는 약제수입공급회사에서 무료로 공급하므로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의 재료외에 혈중농도 측정검사시 B-Counter용 Vial, Pipettetip Dextrose Water 방사능세척을 따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 재료의 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습니까?

답 검사시에 사용되는 각종재료 및 소모품을 일일이 산정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진료수가기준액표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4)에 따라 별도로 인정하는 재료이외는 소정검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으로 B-counter용 Vial 등의 재료대는 산정할 수 없으며 본인에게도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문 외과적 수술을 하는 소아, 장기간 수술을 요하는 환자 및 중환자실에서 원하는 온도로 자동조절할 수 있는 ATOM HC-250 Thermo X Changer라는 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에 장치할 경우 24시간 계속적으로 중류수 21및 알콜4백50CC가 소모되고 있는데 이 장치를 의료보험으로 인정시 어느항목에 적용해야 하는지(재료대 포함),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안되는 경우 본인에게 별도로 징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ATOM HC250 Thermo X Changer는 자동열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조절 장치이므로 입원병실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냉·난방·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의료법 제32조

및 요양급여 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체온조절을 위하여 이같은 기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소정환자 관리료 및 병원관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산정할 수 없으며 본인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문 외래환자의 투약, 대기시간 단축과 약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처방일수가 15일 이상인 처방약제중 정제만 2종이상 처방될 경우 정제를 프라스틱 투약병에 넣어 환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 사용하는 프라스틱 투약병의 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습니까?

답 조제 투약시 사용되는 용기재료대는 진료수가기준액표 제4장 투약 및 처방표-산정지침(4)항에 의해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약용기대는 진료수가 산정방법 6, 7항에 의거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문 안과에서 누낭비강문합술(자-554)시 사용되는 Canaliculus Intubation Set은 Disposable로서 이 수술후 누낭비강의 공간 유지역할을 하기 위하여 수술후 6개월간 유지 후 제거하는 경우 재료대를 별도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답 Canaliculus Intubation set는 누낭비강 문합술시 수술경과 호전 및 치유촉진을 위한 재료이나 같은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진료비용을 절감시킨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수술시 반드시 필요한 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진료수가기준액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등 - 산정지침(10)-26에 의하여 별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 의료보험법 제30조(개정전) 규정에 의거 동일상병에 대한 1백80일 초과 진료비는 환수 조치케 되어 있으므로 환자가 특정상병의 진료중 별개의 상병이 복합되어 진료를 계속하여 1백8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특정상병과 별개의 상병을 분리하여 특정상병의 1백80일을 초과분은 환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진료비 명세서상으로는 상병분리가 불가한 실정으로 해당요양기관에 상병분리를 요청하였으나 요양기관 역시 별첨내용과 같이 이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회답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처리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동일상병에 대한 기준시비는 그간 수없이 발생되었으나 의료보험법 제30조(공·교의보험 제27조 제1항) 본문의 개정으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격상실 후 계속 요양급여 인정시 타진료지역 진료승인시와 '84. 12. 31이전에 요양급여기간 초과로 문제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시비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류중인 사안을 포함하여 앞으로는 어떤 상병을 치료하는 다른 상병이면서 진료비를 구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상병으로 간주 처리하기 바랍니다. 또 진료비 구분 산정이 애매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른 주된 상병을 기준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중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선 생물(분류번호 155)과 만성간질환자 및 경변(분류번호 571)은 155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진단이 확정되기 까지 잠정적 진단명이 571이면 동일상병으로 간주하고, 571의 상병진단이 이화학적 및 병리조직학적 진단에 의한 것으로 상당기간 치료 경과후 155의 상병으로 진행되었

으며 155의 상병으로 판명된 이후 부터는 각기 다른 상병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뇌경색증 및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도 뇌경색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면 입원에 수반하는 진료비용은 뇌경색증 진료비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다만 뇌경색증 치료와 무관하고 퇴행성 관절염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투약료는 퇴행성 관절염 상병진료 비용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30일간의 진료비를 구분 산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치료 등 일일 진료비가 현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양취급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명세서에 의한 심사결정액을 일괄계산 처리하여 그간 누증되고 있는 민원을 신속히 종결 시키기 바랍니다. 요양취급기관에서는 계속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일자라도 월간 진료비는 월별로 구분청구도록 지도 및 홍보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문 방광경검사(내시경)시 동통제거를 위해 리도카인 등의 약제를 사용하여 국소침윤(표면)마취를 시행시 리도카인의 약 재료를 진료수가기준액표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2)의 마취시 사용된 약제로 보아 별도 산정할 것인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4)의 검사에 소요된 약제로 보아 소정검사료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와 또 이 경우 리도카인, 젤리 등을 사용시에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답 방광검사시 마취목적으로 사용한 리도카인을 별표2 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젤리 등의 재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마취는 방광경검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마취수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